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9. 27 선고 2021나326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 G

2. H

3. I

4. J

5. K

6.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티즌

담당변호사 이철의

피고, 피항소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경

변 론 종 결 2022. 8. 23.

판 결 선 고 2022. 9. 27.

제1 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8. 10. 선고 2021가단3130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릉시 B 도로 509㎡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6. 17. 접수 제187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에 따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이와 같이 선행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를 ‘A’로 모두 고친다.
- 제3쪽 제9행의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위 판결은 2017. 12. 8. A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3쪽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한편, A는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인 2022. 5.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원고 G, 자녀들인 원고 H, I, J, K, L은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재형, 판사 조영인, 판사 임세영